

2020.09. 졸업인증 내규 (국어교육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졸업인증제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취지)

졸업인증 시행취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범대 입학 이후라도 진로 및 직업 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 ② 다양한 교내 및 교외 활동을 유도하고, 특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한다.
- ③ ‘임용고사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한국어교사, 일반 취업 준비’ 등 다양한 과정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내실 있는 대학 생활을 유도하고, 다변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교사와 인재를 양성하여 학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인증평가항목 및 인증점수기준)

인증평가항목 및 각 항목별 인증점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임용고사 합격에 800점, 공무원 시험 합격 700점, 한국어 교사 취업(4대 보험가입) 700점, 일반 취업(4대 보험가입 기업) 700점을 부여한다. 임용고사의 경우 1차 합격의 경우 700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시험 역시 1차 합격만으로 600점을 부여한다.

② 성적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통합 평균평점이 3.5 이상일 경우 350점, 3.0 이상 3.5 미만일 경우 300점, 3.0 미만일 경우 250점을 부여한다.

③ 취업활동

임용고사 세미나(특강 포함) 참석의 경우, 교내 세미나는 50점, 교외 세미나는 25점을 각각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국가고사(공무원 시험)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수업당 50점을 부여한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할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취업특강은 과정당 30점, 외국어교육원 수업은 강좌당 30점, 기타 취업 특강은 과정당 30점을 부여한다.

④ 시험응시

임용고사 시험 응시 50점, 공무원시험 응시당 50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당 50점, 일반 취업 응시당 20점(최대 100점)을 부여한다.

⑤ 자격증

교사자격증은 100점, 한국어교사 자격증은 100점, 워드자격 2급, 정보기술실무능력 B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문서실무사 3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등을 포함하여 기타 취업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은 각 50점씩 부여한다.

⑥ 시험성적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은 50점 / 2급은 70점 / 1급은 100점을 부여한다. 한자능력 시험 3급은 100점 / 2급은 150점을 부여한다.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50점, 토익 800점 이상은 500점 / 750점 이상부터 800점 미만은 400점 / 700점 이상부터 750점 미만은 300점을 부여한다. 토플(IBT) 70점 이상 400점 / 80점 이상 500점,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200점 / N1 300점, 중국어능력시험(HSK) 4급 이상 300점 / 3급 200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00점, 국가공인 국어능력 검정시험 100점, KBS 한국어능력시험 100점을 부여한다.

⑦ 인턴십

방과 후 학습 멘토링은 과정당 50점(최대 100점), 외국인 및 다문화 대상 강의, 공무원 인턴, 일반 기업 인턴은 각 100점을 부여한다.

⑧ 교내활동

학생회 임원 활동(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은 1년에 100점을 부여한다. 그 외에 (부)과대, 학회 차장/부장, 학술답사위원은 한 학기당 50점을 부여한다. 학생회 임원과 그 외의 임원의 총합은 200점으로 제한한다.

“MT, 체육대회, 학술제 등” 학과 공식 행사를 1/2학년에는 학년당 최소 4회, 3/4학년에는 학년당 최소 2회를 참여했을 경우 1/2학년 40점, 3/4학년 20을 각각 부여한다. (최대 120점)

관련 스터디(임용고사 스터디, 공무원시험 스터디, 취업 스터디) 운영 및 참여에 각 50점씩 부여한다.

⑨ 수상경력

관련 수상 경력은 회당 50점씩 부여한다.

⑩ 상담실적

재학 중 학기당 1회 5점씩 최대 40점을 부여한다.

⑪ 봉사활동

봉사활동 시간 72-91시간은 50점, 92시간 이상은 100점을 부여한다.

이는 다음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인증 평가 항목	인증 점수			
	임용고시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한국어교사 준비	일반 취업 준비
취업	임용고시 합격 800 1차 합격 700	공무원 합격 700 1차 합격 600	한국어 교사 취업 700	일반 취업 700
성적	3.5 이상: 350 / 3.5미만 ~ 3.0 이상: 300 / 3.0 미만: 250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기준)			
취업활동	임용고시 세미나 (특강) 참석 교내50, 교외25	국사 수업 (B+이상) 50 행정법 수업(B+이상) 50 기타 국가고사 관련 수업(B+이상) 50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100	취업 특강 참여당 30 교내 취업 훈련당 50 외국어교육원 수업 강좌당 30 독서논술지도자 수업 30
시험응시	50	회당 50	회당 50	회당 20 (최대 100)

자격증	교사 자격증 100	워드자격 2급 50 정보기술실무능력 B급 5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50 문서실무사 3급 50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50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50 어학자격증 50 독서논술지도자격증 50	한국어 교사 자격증 100 워드자격 2급 50 정보기술실무능력 B급 5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50 문서실무사 3급 50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50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50 어학자격증 50 독서논술지도자격증 50	워드자격 2급 50 정보기술실무능력 B급 5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50 문서실무사 3급 50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50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50 어학자격증 50 독서논술지도자격증 50
시험성적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 1차 합격: 700점 - 2차 합격: 800점	한국사 능력 시험 3급 50 / 2급 70 / 1급 100 토익 800이상 500 / 750이상 400 / 700이상 300 토플(IBT) 70점 이상 400 / 80점 이상 500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200 / N1 300 중국어능력시험(HSK) 4급 이상 300 / 3급 200 한자능력 시험 3급 100 / 2급 15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국어능력 검정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등 100 토익 800이상 500 / 750이상 400 / 700이상 300 토플(IBT) 70점 이상 400 / 80점 이상 500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200 / N1 300 중국어능력시험(HSK) 4급 이상 300 / 3급 200 한자능력 시험 3급 100 / 2급 150	토익 800이상 500 / 750이상 400 / 700이상 300 토플(IBT) 70점 이상 400 / 80점 이상 500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200 / N1 300 중국어능력시험(HSK) 4급 이상 300 / 3급 200 한자능력 시험 3급 100 / 2급 150
인턴십	방과 후 학습 멘토링 50 (최대 100)	공무원 인턴 100	외국인 및 다문화 대상 강의 100	회사 인턴 100
교내활동	1. 학생회 - (1년) 100점 임원(과대, 부과대, 학회 부장, 차장), 학술답사위원 (1학기) - 50점 <1, 2 종합 최대 200점> 2. 학생회 주관 행사 (국교의 날, 국교체전 등등) 3. 공식행사 - 최소 12회(1, 2학년 최소 4회씩 / 3, 4학년 최소 2회씩 참석했을 경우 점수부여), 최대 120점/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 4학년 20점) 학술답사 / 한글날 / 스승의 날 / 체육대회 / 글맘제 (학회별 마일리지 표 제작) / MT			
	관련 스터디 운영 및 참여 50			
수상경력	관련 수상 경력 회당 50			
상담실적	학기당 1회 5점 최대 40			
봉사활동	73-91시간: 50 / 92시간 이상: 100			
총점 (졸업 인증 최소 기준 점수) 1000				

제4조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졸업인증제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졸업인증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기준은 본 내규 제 3조와 같으며, 취득한 평가항목별 인증점수가 최소 2개 과정에 걸쳐 합계 1000점 이상이 되면 졸업인증으로 한다.
- ②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시스템이나 취업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증명이 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학과장은 졸업예정자별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 후 학과교수회의에 이를 통보 하고 최종 승인한다.
- ④ 인증 항목이나 인증 점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 (시행시기)

본 졸업 인증제는 201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졸업인증의 개정)

졸업인증의 개정 및 평가 항목별 세부인증기준의 변경은 학생들의 성취도와 교내외의 여건 변화 등을 토대로 1년 주기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 ② 2012년 이전 입학생 중 졸업 시점이 2016년 이후인 경우, 2012년 이후 재학 학기 당 125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 ③ 다전공자 및 편입생의 경우, 본 학과 재학 학기 당 125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